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 310 회 임시회

-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

2025. 3.

박 정 환 의원

-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제안자 : 박정환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금주구역 지정에 필요한 규정을 추가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안 제4조제6항에서는 지역 축제 및 행사 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안 제4조제7항에서는 일시적 음주를 허용하는 경우 그 운영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.

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,

-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2025년 2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
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,

-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- 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【박정환 의원 대표 발의】

의안 번호	00925015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연월일: 2025. 2. 26.

발 의 자: 박정환, 장호섭, 황국주,
김정희, 박종길, 남현주

1. 개정이유

- 금주구역 지정에 필요한 규정을 추가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역 축제 및 행사 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제6항)
- 나. 일시적 음주를 허용하는 경우 그 운영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(안 제4조제7항)

3. 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국민건강증진법」
- 나. 비용추계서 : 비대상

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금주구역의 지정)”을 “(금주구역의 지정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.
- ⑦ 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일시적 음주를 허용하는 경우, 그 운영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<u>현</u> <u>행</u>	<u>개</u> <u>정</u> <u>안</u>
<p>제4조(금주구역의 지정) ① ~ ⑤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4조(금주구역의 지정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<u>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.</u></p> <p>⑦ <u>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일시적 음주를 허용하는 경우, 그 운영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.</u></p>

관계법령

□ 국민건강증진법

제8조의4(금주구역 지정)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